

의안번호	2200556
의 퇴 인	임광현의원
회 답 일	2024.6.13.
추계번호	24E043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우리아이자립펀드 계좌에 대한 비과세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91조의25 (우리아이자립펀드계좌에 대한 비과세)	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에 따라 우리아이자립펀드에 가입한 계좌에서 가입자가 18세가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,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- 우리아이자립펀드에 가입한 가입자의 보호자가 우리아이자립펀드 계좌에 납입한 적립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

주: 1. 본 개정안은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에 따른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 도입(신설)을 전제로 함
 2.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는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아동이 성인(만18세)이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의 금액을 계좌에 입금해주고, 등록을 한 금융기관 등이 이를 펀드 형식으로 운용하는 제도를 말함. 해당 계좌에 보호자도 매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할 수 있고, 아동이 18세가 되기 전까지 인출이 불가함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1조의25 (우리아이자립펀드계좌에 대한 비과세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본 개정안에 따라 우리아이자립펀드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,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되지만, 이에 따른 세수변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해당 펀드에서 발생할 금융소득 등에 대한 자료 필요
- 본 개정안은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에 따른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 도입(신설)을 전제로 함
 -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 도입 시 해당 펀드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등에 대해

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
- 현행 개인의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%의 세율(원천징수세율)을 적용하고,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 등)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(누진세율)을 적용

- 그러나 향후 해당 펀드 운용으로부터 발생할 금융소득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자료에 의한 객관적인 추계가 불가능함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지원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지원	02-6788-4662	jwpark1209@assembly.go.kr